외국인유학생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유학생]

『외국인유학생』 콘텐츠는 유학(D-2) 및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교육과정 선택 및 입학 준비부터 적합한 비자 발급, 입국 심사 등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집 구하기, 은행 이용, 대중교통 이용, 운전, 휴대전화 개통, 건강보험 가입, 아르바이트 등의 국내 생활을 거쳐 학업 종료 이후에 진학 또는 취업하여 체류를 결정하거나 귀국하게 되는 유학 절차 전반에 관한 내용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안내합니다. 또한, 장학금 및 외국어 상담, 안내 등 이용자에게 유익할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외국인유학생 1
1. 유학 준비 4
1.1. 유학 정보 4
1.1.1. 한국 유학 알아보기 4
1.2. 입학 준비 6
1.2.1. 교육과정 선택 및 입학 6
2. 입국 10
2.1. 비자 발급 10
2.1.1. 비자 및 체류기간 10
2.2. 입국허가 14
2.2.1. 입국 및 재입국 14
2.3. 외국인등록 17
2.3.1. 외국인등록 및 변경신고 17
3. 국내 생활 20
3.1. 주거 20
3.1.1. 집 구하기 20
3.1.2. 국제이사 22
3.2. 금융 거래 25
3.2.1. 은행 이용 등 25
3.3. 교통·운전 26
3.3.1. 대중교통 이용 26
3.3.2. 운전 28
3.4. 통신 및 우편 30
3.4.1. 휴대전화 등 가입 30
3.4.2. 우편·택배 이용 31
3.5. 의료 32
3.5.1. 국민건강보험 가입 32
3.6. 유학 중 아르바이트 34
3.6.1.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34
4. 학업 종료 38
4.1. 체류 결정 38
4.1.1. 진학 또는 취업 38
4.2. 귀국 결정 41
4.2.1. 출국 시 준수사항 41

1. 유학 준비

1.1. 유학 정보

1.1.1. 한국 유학 알아보기

외국인유학생의 개념

"외국인유학생"이란?

▪"외국인유학생"이란 대한민국에서 유학이나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다음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제1항, 제10조제1호, 제10조의2제1항제2호·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5호·제7호).

체류자격	체류자격 부여 대상
유학 (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일반연수 (D-4)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다만, 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報酬)를 받거나 유학(D-2)·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유학 절차

한국 유학 절차도

▪시간적 순서에 따른 한국 유학 준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관련 콘텐츠
입학 준비	교육과정 선택 및 입학	바로가기
▼		
입국	비자 발급: 비자 및 체류기간	바로가기
	입국허가: 입국 및 재입국	바로가기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 및 변경신고	바로가기
▼		
국내 생활	집 구하기	바로가기
	국제이사	바로가기
	은행 이용 등	바로가기
	대중교통 이용	바로가기
	운전	바로가기
	휴대전화 등 가입	바로가기
	우편·택배 이용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가입	바로가기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바로가기
▼		
학업 종료	체류 결정: 진학 또는 취업	바로가기
	귀국 결정: 출국 시 준수사항	바로가기

외국인유학생 지원

장학금 지원

▪외국인유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학금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Plan your studies-장학금 참조).

구분	내용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장학금	세계 각국의 우수 인재를 초청하여 학위 취득 등을 지원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장학사업 √ (장학 기간) 한국어 연수 + 전문 학사(2~3년), 학사(4~6년), 석사 (2년), 박사(3년) √ (장학금 지원) 항공료, 어학 연수비, 등록금, 학업 장려금 √ (세부 내용 확인)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
그 밖의 장학금	대학, 재단 및 기업의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

※ 외국인유학생 대상 장학재단 장학금

기관명	장학금명	홈페이지
(재)대웅재단	글로벌 장학프로그램	www.daewoongfoundation.or.kr
로터리클럽	외국인 국내유학생 장학금	www.rotarykorea.org
삼성꿈장학재단	글로벌 희망장학생	www.sdream.or.kr
연필장학재단	연필장학재단 장학생	www.pensaf.or.kr
우정교육재단	장학사업	www.woojungedu.co.kr
재단법인 리앤원	인재지원장학금	www.leewonfoundation.org
포스코청암재단	포스코아시아펠로십	www.postf.org
한세예스24문화재단	외국인장학생	www.hansaeyes24foundation.com
현대차 정몽구 재단	현대차 정몽구 글로벌 장학	www.cmkfoundation-scholarship.org

(출처: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외국인유학생 가이드북』, 2025. 12., 12쪽 참조)

※ 장학금 신청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제교육원(www.niied.go.kr),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 사이트 및 해당 대학, 재단, 기업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안내 지원

▪외국인유학생은 원활한 국내 체류와 학업 생활을 위하여 다음의 전문 기관들을 통해 체계적인 상담과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www.hikorea.go.kr, ☎1345)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해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대한민국 생활 적응에 필요한 민원 상담, 정보 안내 및 민원에 관한 통역·번역을 지원하고 있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0조제2항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참조)
한국유학종합시스템 (Study in Korea)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대한민국 유학에 대한 정보와 대한민국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소개하고 있으며, 온라인 입학 신청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각 학교의 외국인유학생 담당자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는 재학 중이거나 연수 중인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있으므로(「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제1항), 학교생활이나 국내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속 학교의 외국인유학생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청할 수 있음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주한공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본국의 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 및 영사관에서는 재외국민등록을 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갱신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전쟁 등이 발생하거나 본인의 신상에 이상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들의 주소, 전화번호 등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주한공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긴급 연락처 √ 범죄 신고 ☎112 √ 화재·응급환자·긴급구조 신고 ☎119 √ 여성 긴급 상담 전화 ☎1366 √ 다누리(다문화 통합 지원) 콜센터 ☎1577-1366 √ 외국인 관광 안내 ☎1330	

1.2. 입학 준비

1.2.1. 교육과정 선택 및 입학

한국 교육과정 및 입학 자격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

▪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되며,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전단 참조).

▪ 교육과정별 수업연한(授業年限), 입학 자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3항,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39조, 제42조, 제43조제1항, 제46조 및 제47조제1항).

구분	수업연한	입학 자격
초등학교	6년 의무교육(무상)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함 ※ 위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할 수 있음
중학교	3년 의무교육(무상)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 √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고등학교	3년 무상교육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 √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대학교·대학원 교육과정

▪ 외국인유학생이 입학할 수 있는 고등교육 과정으로는 일반대학 4년 과정, 전문 학사 2~3년 과정, 대학원 석사·박사 2년 이상의 과정이 있으며, 학교별 수업연한과 입학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고등교육법」 제2조,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8조, 제42조제2항, 제48조제1항, 제50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50조의4제3항, 제53조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항, 제58조의3제1항, 제58조의4제2항, 제57조 및 제65조제1항).

구분	수업연한	입학 자격
대학	학사학위과정: 4년[다만,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수의과대학·약학대학(한약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은 제외)의 경우 6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 위에 따른 자격이 인정된 사람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6년 이상(다만,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함)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8년 이상(다만,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함)	
산업대학	제한 없음	
교육대학	4년	
원격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학사학위과정: 4년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이상(다만, 간호과·방사선과·임상병리과·물리치료과·치기공과·치위생과·작업치료과·어업과·기관과 및 학교에서 정한 과의 경우 3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2년 이상(전문대학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 등), 1년 이상(전문대학 수업연한이 3년인 학과 등)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어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정함) √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할 것 √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와 관련된 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관련 분야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기술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학사학위과정: 2년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박사학위과정: 2년 이상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4년 이상(다만,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입학 절차

※ 아래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교육기관마다 세부 절차 등이 다를 수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지원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의 최신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학 절차(공통)

▪외국인유학생의 한국 교육기관 입학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에 따릅니다(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Plan your studies with Korea in 5 steps 참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교육과정 선택	▶	입학 지원	▶	입학 사정 (査定)	▶	입학 허가	▶	비자 신청

교육기관별 입학 사정(査定)

▪외국인유학생은 다음에 따라 한국 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초등학교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의 입학을 신청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
중학교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있는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또는 중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을 신청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1호)
고등학교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제2항)
대학교	외국인유학생 모집 정원을 각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과는 별도로 책정하여 운영함(「고등교육법」 제32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제7호 및 제30조제8항제1호 참조) ※ 대학교·대학원의 모집 정원, 전형 방법, 지원 서류 등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지원하려는 학교의 모집 요강을 확인하세요.
대학원	

※ 대학, 단과대학, 대학원 등 학교 유형 및 입학 요건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입국

2.1. 비자 발급

2.1.1. 비자 및 체류기간

비자(사증)

"비자(사증)"란?

▪"비자(사증)"란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 추천 행위를 의미합니다(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초청/사증(VISA) 참조).

> ※ 법령에서는 "사증"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하 이 콘텐츠에서는 실생활에서 더 흔히 사용되는 용어인 "비자"를 사용합니다.

▪외국인유학생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유효한 여권과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94조제2호).

> ※ 비자 없이 입국하기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위에도 불구하고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
> 1. 재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 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2.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 대상이 되는 사람
>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 · 대한민국과 수교(修交)하지 않은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위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발급한 외국인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4항).

외국인유학생의 비자 및 체류기간

유학(D-2) 및 일반연수(D-4)

▪외국인유학생은 다음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고, 해당 비자별 체류기간 내 대한민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호, 제10조의2제1항제2호·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별표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5호·제7호).

체류자격 (비자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 범위	체류기간의 상한
유학(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2년
일반연수(D-4)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報酬)를 받거나 유학(D-2)·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2년

> ※ 외국인유학생 비자 세부 약호

구분		내용
유학 (D-2)	D-2-1	전문학사과정
	D-2-2	학사과정
	D-2-3	석사과정
	D-2-4	박사과정
	D-2-5	연구과정
	D-2-6	교환학생
	D-2-7	일·학습연계 유학
	D-2-8	방문학생
일반연수 (D-4)	D-4-1	한국어 연수
	D-4-2	일반연수
	D-4-3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유학
	D-4-5	한식조리연수
	D-4-6	우수 사설 교육기관 연수
	D-4-7	외국어 연수

[출처: 비자포털(www.visa.go.kr) 참조]

Q. 한국 어학연수를 계획 중인데, 연수 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어떤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연수 기간을 90일 이하로 짧게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기방문(C-3)'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제1항제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 제4호).

비자 발급

비자 발급 절차(일반)

▪ 외국인유학생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세부 내용
재외공관 방문	대한민국 비자는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출입국관리법」 제8조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9조 참조) ※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란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 중 하나를 말함(「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참조)
▼	
비자 신청	비자 발급 신청서에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비자 심사	법무부장관이 비자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법무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비자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함(「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자 발급	비자 심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비자가 발급되며, 그 비자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후단 참조) ※ 법무부장관은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음(「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유학생은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음(「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전단)

※ 비자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유학생은 비자 발급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5).

체류자격 (비자 기호)	제출 서류
공통 사항	여권 및 여권 사본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 건강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거주하는 결핵 고위험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함)
유학 (D-2)	1.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D-2-1, D-2-2, D-2-3, D-2-4, D-2-6, D-2-7, D-2-8):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 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학장 발행)
	2.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D-2-5): 연구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 최종학력증명서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 관련서류
일반연수 (D-4)	1.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어학을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우(D-4-1, D-4-7):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재정입증 관련서류 또는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 서류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급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함)
	2.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D-4-3):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재정입증 관련서류
	3. 그 밖의 연수의 경우(D-4-2, D-4-5, D-4-6):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연수기관의 설립 관련서류 재정입증 관련서류 √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는 경비 부담 확인서 √ 그 밖의 경우에는 국내송금이나 환전 증명서 신원보증서(연수비용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 지급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비자 발급의 취소·변경처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유학생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비자 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 사유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 "비자발급인정서"의 발급

· "비자발급인정서"란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비자를 발급하기 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그 외국인의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1항·제2항 및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초청/사증-사증발급인정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1.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4. 문화예술(D-1)부터 27. 결혼이민(F-6)까지, 29. 방문취업(H-2), 30. 기타(G-1) 및 별표 1의3 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비자면제협정 체결 국가, 외국인 무비자 입국 및 비자발급인정서 발급절차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자의 개념 및 종류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비자·여권』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입국허가

2.2.1. 입국 및 재입국

입국

입국 심사

▪외국인유학생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답하는 등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국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단서).

입국신고서 제출 생략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유효한 경우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유효한 경우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에 따른 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하며, 외국인유학생이 각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입국 심사 요건

1. 여권과 비자가 유효할 것. 다만, 비자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만을 말함
2.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3.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4. 체류기간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정해졌을 것
5.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 입국 시 생체정보의 제공

· 입국하려는 17세 이상인 외국인유학생은 위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을 때 다음의 방법으로 생체정보(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제1항, 제2조제15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집게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다만,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집게손가락의 지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서에 따라 지문을 제공해야 함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유학생이 위에 따라 생체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제2항).

입국허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제출받은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하고,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5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본문).

▹다만,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 또는 입국심사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

입국 금지 및 거부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입국 금지 대상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 일본 정부
√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1.부터 7.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유학생의 본국(本國)이 위 사유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2항).

※ 조건부 입국허가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유학생에 대하여는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수 있으며(「출입국관리법」 제13조제1항),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은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72시간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1.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한 여권과 비자(비자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를 갖추지 못하였으나 일정 기간 내에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입국 금지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거나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다고 의심되어 특별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1. 및 2.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위에 따른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조건부입국허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허가서에는 주거의 제한, 출석요구에 따를 의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預置)하게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3조제2항).

·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유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내에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72시간의 범위에서 조건부 입국허가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유학생이 그 허가기간 내에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출입국관리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국심사를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전단).

입국허가 및 조건부 입국허가의 취소·변경처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유학생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입국허가 및 조건부 입국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입국허가 및 조건부 입국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사유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재입국

재입국 허가의 대상 및 기간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유학생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신청을 통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재입국을 허가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본문).

› 다만,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남아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체류기간으로 함)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단서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제2호).

▪ 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단수재입국허가(한 차례만 재입국할 수 있음) : 1년

› 복수재입국허가(2회 이상 재입국할 수 있음) : 2년

재입국 신청 및 허가

▪ 재입국 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재입국 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5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제1항).

▪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위에 따른 재입국 허가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재입국 허가인을 찍고 재입국 허가기간을 기재하거나 재입국 허가 스티커를 부착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5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제4항 전단).

› 다만, 무국적자 또는 대한민국과 수교(修交)하지 않은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출입국관리법」 제7조제4항)에 대해서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제4항 후단).

› 재입국 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제3항).

재입국 허가의 효력

▪ 재입국 허가를 받으면 대한민국을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비자 발급 등의 절차 없이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 참조).

▪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유학생이 외국에서 이를 분실한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해서 재입국 허가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4항).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유학생이 출국 후 재입국하는 때(복수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최종 입국하는 때)에 재입국허가서를 회수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 재입국 허가기간의 연장

· 외국인유학생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재입국 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3항).

· 재입국 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재입국 허가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8제1항).

· 재외공관의 장은 재입국 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외국인유학생의 여권 또는 재입국허가서에 재입국 허가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연장허가기간을 기재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8제3항).

√ 재입국 허가기간 연장허가기간은 재입국 허가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정해지며, 이 경우

그 연장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8제2항).

※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위치 및 연락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 외국인등록

2.3.1. 외국인등록 및 변경신고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 대상 및 등록사항

▪ 외국인유학생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2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외국인등록사항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4. 본국의 주소와 국내 체류지 5.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6. 입국일자 및 입국항 7. 비자에 관한 사항 8. 동반자(「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동거하는 사람을 말함)에 관한 사항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의 재학 여부 10. 사업자 등록번호

외국인등록 신청 방법

▪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외국인유학생은 외국인등록 신청서에 여권과 다음의 체류자격별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7호 및 별표 5의2).

체류자격 (비자 기호)	제출 서류
공통 사항	여권, 재학증명서(재학증명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출함) 여권용 사진(3.5cm×4.5cm) 1장 체류지 입증서류
유학 (D-2)	재학증명서 건강진단서
일반연수 (D-4)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어학 연수를 받는 경우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인 경우: √ 재학증명서 √ 건강진단서 그 밖에 일반연수를 받는 경우: √ 연수기관 설립 관련 서류

▪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는 생체정보(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조제15호).

※ 이에 따른 생체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2항).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외국인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외국인유학생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외국인등록증을 말함. 이하 같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 본문 및 제6항).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17세가 된 때에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유학생이 이를 분실한 때에는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전단).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2호 및 제95조제7호).

※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의2제1항).

1.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2.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재입국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1. 또는 2.에 준하는 말소 사유를 발견한 경우

Q. 외국인등록증은 항상 갖고 다녀야 하는 건가요?

A. 외국인유학생(17세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항상 여권·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7조제1항).

외국인등록증 등의 휴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8조제1호).

변경 신고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유학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호·제2호).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사항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함)이나 추가 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4호에 따른 재학 여부의 변경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가 접수되면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정리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고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사실을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군·구 및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제1호).

체류지 변경 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유학생이 체류지를 변경했을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전단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제2항).

체류지 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
1. 임대차계약서 2. 매매계약서 3. 그 밖에 체류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유학생이 위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받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체류지 변경신고 필인을 찍어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유학생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체류지 변경사항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에 수록하는 것으로 외국인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8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8조제2호).

※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위치 및 연락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및 체류지 변경 신고 방법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국내 생활

3.1. 주거

3.1.1. 집 구하기

대한민국에서의 거주 형태

주거 유형

▪ 외국인유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 형태는 다양하며, 거주 환경과 비용 등의 측면에서 각각 차이가 있으므로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른 거주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외국인유학생 가이드북』, 2025. 12., 25쪽 참조).

› 대한민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길다면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기숙사	특징: 대학이 운영하는 학생 전용 숙소로 캠퍼스 내 또는 근처에 위치
	비용: 소정의 보증금 + 기숙사비 납부(학기별 또는 월별)
	장점: 통학이 편리하고 안전하며 비용이 비교적 저렴함
	단점: 생활규칙이 엄격하고 학교 방침에 따른 다인실 사용이 불가피할 수 있음. 신청 경쟁이 높음
하숙	특징: 대학 근처 일반 가정에서 거주하며 식사를 제공받는 형태
	비용: 소정의 보증금 + 월 거주비 납부(식비 포함)
	장점: 식사 제공, 한국 가정문화 체험 가능
	단점: 생활 규칙, 제한된 식사 시간 등 제약이 있을 수 있음
주택임대차 (월세·전세)	특징: 원룸,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 다양한 주택을 빌려서 거주
	비용: 월세: 보증금 납부(일회성) + 월 임대료·관리비 납부 전세: 전세금 납부(일회성) + 월 관리비 납부(월 임대료 없음)
	장점: 독립성 및 사생활 보장, 자율적인 생활 가능
	단점: 월세: 지속적인 월 임대료·관리비 지출 필요 전세: 전세금 부담이 큼

집 계약 방법

계약 절차(일반)

▪ 외국인유학생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주택임대차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절차	세부 내용

계약 전 유의 사항	정보수집	주택에 관한 정보는 부동산 앱, 지역 광고지,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구하는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및 매매와 관련된 법적 사항의 확인, 현장 방문 등의 절차를 대행해 주므로 편리하지만, 그에 따른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본문 참조).
	▼	
	등기사항 등 확인	관심 있는 주택을 선정했다면 거래의 안전을 위해 그 주택의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열람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부동산에 관한 표시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및 제19조제1항). ※ 등기기록의 열람이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등기소, 구청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가 함께 작성하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인도일시, 그 밖의 조건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일반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또는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는데, 이 계약금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며, 계약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민법」 제565조제1항 참조).
	▼	
	잔금 지급 및 입주	일반적으로 잔금은 입주하는 날 지급합니다(「민법」 제536조 및 제568조 참조). 잔금을 지급할 때는 부동산등기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임대차계약 후 부동산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입주 후 유의 사항	체류지 변경 신고	주택에 입주했다면 그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 체류지 변경 신고는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거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주택임대차의 경우 체류지 변경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우선변제권)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주택 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유학생이 주택을 임대차하거나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전월세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당사자가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참조).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구(자치구를 말함)"에 한정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2항).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부동산 매매계약 거래 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참조).

Q. 집을 구할 때 공인중개사가 꼭 필요한가요?

A. 다른 나라에서는 필요한 집을 찾아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일이 많아 공인중개사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집을 구할 때 공인중개사가 필수는 아니나, 집 계약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와 상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나 외국인유학생 입장에서 집 계약은 중요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본인이 원하는 집을 찾았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는 게 안전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외국인 거주자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하여 외국어로 임대차(전월세)계약 과정의 주요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MySeoul(global.seoul.go.kr)-서울시소식 참조]

※ 부동산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주택임대차』 및 『부동산 매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2. 국제이사

해외 이사물품 수입통관

"해외 이사물품 수입통관"이란?

▪"해외 이사물품 수입통관"이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관세청(www.customs.go.kr)-개인 통관-해외 이사물품 및 「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참조).

이사물품의 인정 범위

▪세관장은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다음의 물품을 제외하고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는 경우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이사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1.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2.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3. 물품의 종류·수량으로 보아 판매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가족 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5. 그 밖에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이사물품 반입기간

▪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을 말함. 이하 같음)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이사물품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 입국 후 외국 영주권포기자: 외국 영주권포기일

√ 귀화자: 외국국적말소일 또는 우리나라 국적취득일

√ 국적회복자: 국적회복일 또는 외국국적상실일

▹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3항).

√ 천재지변, 운항선사(항공사)의 부도 등 이사물품을 기한 내 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에서 정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또는 우리나라 거주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위 두 가지에 준하는 사유로 세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수 과세 대상 물품

▪ 세관장은 다음의 물품(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은 제외함)에 대하여는 과세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과세 대상 물품
1. 선박 2. 항공기 3. 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차량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함) 4.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 5.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6.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1.부터 4.까지 및 6.에 해당하는 물품은 사용여부를 불문합니다.

※ 과세가격의 결정

· 이사물품 또는 단기체류자 반입물품(이하 "이사물품등"이라 함)의 과세가격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정범위를 초과한 과세대상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해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

1.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신품가격의 80%
2. 사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품가격의 60%
3. 사용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신품가격의 40%
4.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신품가격의 20%

· 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 가격(List Price)에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최초 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 구입가격 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그 가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

해외 이사물품 수입신고 및 세금 납부

이사물품 반입내역서의 작성 및 수입신고

▪ 이사물품등은 신고인의 명의로 수입신고 해야 합니다. 다만, 이사물품 반입내역서는 다음의 사람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 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이하 "이사자등"이라 함)
- 이사자등의 동반가족
- 이사자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족임이 입증된 사람

▪ 이사물품등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2항).

이사물품 수입신고 시 제출 서류
1. 수입신고서 2.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3. 포장명세서 4. 선하증권, 화물운송장, 복합운송서류 등 운송관련 서류 5. 거주기간 확인 서류 6. 자동차 관련 서류 7. 입국 시 휴대반입(별송품 포함) 신고한 서류(휴대반입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8. 그 밖에 세관장이 이사자등 판정, 거주기간의 계산, 과세가격의 결정 등 이사물품등의 통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1. 및 2.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송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 세금 납부

▪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사물품등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수리 후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제1항 및 「관세법」 제24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이사자등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제2항).

▪ 이사자등이 과세대상 이사물품을 수입신고 시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5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함)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Q. 세관에 이사물품 수입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내로 반입하는 해외 이사물품의 경우 ① 이사자(화주)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 접속 후 게시된 매뉴얼을 활용하여 직접 수입신고 하거나, ② 관세사 등의 통관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통관수수료는 관세사에게 직접 문의하셔야 하며, 이는 화주 부담입니다.

(출처: 서울본부세관 국제이사화물통관센터, 『해외 이사물품 통관 안내서』, 2024. 5., 34쪽 참조)

※ 해외 이사물품 수입통관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www.customs.go.kr) 사이트 및 관세청 영문(www.customs.go.kr/english)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국내 이사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이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금융 거래

3.2.1. 은행 이용 등

출입국 시 외화 휴대 반입

외국환 수입신고 등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유학생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함, 이하 같음)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그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17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2항제1호).

▹위 신고를 받은 관할 세관의 장은 지급수단의 신고 및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4항).

▪외국인유학생이 한국 내 고용에 따른 보수나 소득 등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는 요하지 않으나 반드시 해당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제1항제6호바목 참조).

▹위 확인요청을 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수단의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제2항 참조).

> ※ 출·입국 외환신고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www.customs.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전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 경우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고자 하는 외국인유학생은 해당 외국환의 취득이 신고 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2-2조제1항 본문 참조).

▪다만, 미화 2만불 이하(같은 날에 외국인유학생이 2회 이상 환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이 미화 2만불 이하인 경우에 한함)로 환전할 때는 예외적으로 신고 등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2-2조제1항 단서·제1호 및 「외국환거래법」 제4조제1항 참조).

원화를 외화로 바꾸는 경우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고자 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당 환전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제1항).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환전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제4항).

▹건당 5천불 이내인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신고를 요하지 않는 거래로서 외국에 있는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경우

은행 계좌(통장) 개설 및 송금

계좌(통장) 개설

▪외국인유학생은 본국으로부터 송금을 받기 위한 용도로 외국환은행에 외화자금 예치를 위한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2-6조의2제1항제2호나목).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금융거래 목적 증명서류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 참조).

▪계좌(통장) 개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북」』, 2024, 2쪽 참조).

은행 방문		상담		신청서 작성		비밀번호 설정		발급 확인
번호표 뽑고 대기하기	▶	은행원에게 통장 또는 계좌 개설 요청하기	▶	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서명 등 작성하기	▶	통장 비밀번호와 현금카드 비밀번호 정하기	▶	발급된 통장과 현금카드 확인하기

해외 송금을 위한 은행 지정

▪ 외국인유학생이 한국의 은행 계좌에서 해외로 송금하려는 경우 외국환거래의 신고 등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10-11조제1항제3호 참조).

▹ 한국 내 고용에 따른 보수나 소득 등을 해외 송금하는 경우 해당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제1항제3호 참조).

▹ 다만, 연간 미화 5만불 범위에서 송금은 별도의 입증 서류 없이 가능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제2항 참조).

※ 외국어 상담 가능 은행 정보

은행명	전화번호	은행명	전화번호
우리은행	1599-2288	중소기업은행	1566-2566
국민은행	1599-4477	농협은행	1661-3000
신한은행	1577-8380	수협은행	1588-1515
하나은행	1599-6111	전북은행	1588-4477
스탠다드차타드	1577-7744	경남은행	1600-8585
씨티은행코리아	02-3704-7100	부산은행	1588-6200

※ 금융사기 관련 연락 정보

기관명	전화번호	내용
금융감독원	1332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관련 피해상담 및 환급
경찰청	112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신고 및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팸 메시지 신고, 피싱 사이트 차단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피싱사기 피해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 절차 안내

(출처: 서울특별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북」』, 2024, 1~2쪽 참조)

※ 외국인을 위한 금융생활 정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www.fss.or.kr/edu)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교통·운전

3.3.1. 대중교통 이용

※ 아래의 내용은 수도권 대중교통 체계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이용

대중교통수단의 종류 및 이용

▪외국인유학생은 다음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6항, 제7항, 제8항제1호 본문·제2호 본문·제3호 및 다누리(liveinkorea.kr)-한국생활안내-교통수단 참조].

구분		내용
버스	시내버스	서울 및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운행 방식과 노선 특성에 따라 간선버스, 지선버스. 순환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 M버스가 있음 버스요금은 탈 때 현금을 지불하거나 교통카드를 사용함
	고속버스	운행거리가 100km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출발지와 도착지 이외에 정차하지 않고 운행함 티켓 구입 방법: 터미널 현장 구입 또는 예매사이트[코버스(www.kobus.co.kr) 또는 타고(www.bustago.or.kr)] 이용
	시외버스	출발지와 도착지가 있는 행정구역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에 있는 1개소 이상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함 티켓 구입 방법: 터미널 현장 구입 또는 예매사이트[시외버스 통합 예매시스템(txbus.t-money.co.kr)] 이용
지하철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운행 시간은 일반적으로 05:30부터 24:00까지임 수도권에는 9개의 지하철과 인천 1·2호선, 분당선, 신분당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등이 운영되고 있음 지하철 요금은 교통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 또는 카드로 승차권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음
기차		대부분의 주요 대도시에는 기차역이 있으며, 버스 및 지하철과 연결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종류로는 고속철도(KTX·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이 있음 티켓 구입 방법: 기차역 현장 구입 또는 다음의 예매사이트 이용 √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레츠코레일(www.letskorail.com) 사이트 및 앱 √ SRT: SR(etk.srail.co.kr) 사이트 및 앱

※ 교통카드 구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요금을 전자적으로 지급·결제하는 카드나 그 밖의 매체를 말하며,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면 현금 없이 편리하게 요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참조).

교통카드는 크게 선불, 후불, 일회용 교통카드로 나뉘며, 종류별 구입 및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www.seoul.go.kr) 및 인천교통공사(www.ictr.or.kr) 사이트 참조].

구분	내용
선불 교통카드	편의점이나 지하철역 매표소, 거리 판매점 등에서 카드 구입: 티머니(T-money) 카드, 이즐(ezl) 카드 등 원하는 금액 충전, 사용할 때마다 요금 차감(재충전 가능)
후불 교통카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교통카드 기능 추가 충전 불필요, 카드 결제일에 대중교통 이용 요금 청구
일회용 교통카드	지하철역 내 자동발매기에서 구입 목적지 선택 후 요금과 보증금 결제 지하철 하차 후 지하철역 내 보증금 환급기에서 보증금 환급

※ 외국인을 위한 수도권 지하철 서비스

구분	내용
외국어버전 지하철 앱 “Seoul Subway”	외국인을 위한 쉬운 노선도 경로 검색, 위치기반 진입열차 정보 제공, 역사 내 길 안내, 역 주변 관광지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외국어 동시대화 시스템	외국인과 역 직원 간의 대화를 투명 디스플레이를 통해 실시간 번역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5년 기준 13개 언어 구현이 가능하고 11개 역사에서 이용할 수 있음

[출처: 서울교통공사 블로그(blog.naver.com/seoulmetro01) 참조]

Q. 외국인유학생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을 받을 수 있나요?

A. K-패스는 만 19세 이상 국민 중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 요금 중 일부를 적립하여 환급해 주는 제도로서,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으면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회원가입 후 적용이 가능합니다. k-패스 이용 방법, 이용가능 도시 등 더 자세한 내용은 K-패스 사이트(korea-pass.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K-패스(korea-pass.kr)-자주묻는질문 참조]

※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2. 운전

운전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도 본인이 직접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려면 ①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②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본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미리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내운전면허시험 응시 자격

▪ 외국인유학생도 대한민국에서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면 다음의 면허 종류에 따른 취득 연령에 이르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면허 종류	취득 연령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	19세 이상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18세 이상인 사람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함)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7호).

국내운전면허 취득 절차

▪ 운전면허시험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응시할 수도 있고,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통해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절차	세부 내용
① 응시 전 교통안전 교육	학과 시험 전까지 이수 완료 준비물 : 신분증
▼	
② 신체검사	시험장내 신체 검사실 또는 병원에서 검사 진행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시험장 내 신체검사원 없음)
▼	
③ 학과시험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4.5cm) 3매
▼	
④ 기능시험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 대리접수 :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 ※ 불합격 시 :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 재응시 가능
▼	
⑤ 연습면허 발급	제1종, 제2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학과시험, 장내기능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
▼	
⑥ 도로주행시험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 ※ 불합격 시 :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 재응시 가능
▼	
⑦ 운전면허증 발급	제1종, 제2종 보통면허 : 연습면허 취득 후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의 면허 : 학과시험·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참조]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제3호).

외국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운전면허시험 면제
1.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된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또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3.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외국운전면허증의 국내운전면허증 교환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다음의 절차를 통하여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참조].

1단계		2단계		3단계
대사관 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 심사	▶	적성검사(신체검사) 및 학과시험 ※ 한국면허 인정 국가의 면허증 교환 시 학과시험 면제	▶	국내 면허 교환발급 ※ 서류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 발견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자동차(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배기량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전단).

√ 대한민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제운전면허증(제네바 국제협약 가입국) 및 운전면허 상호인정국가(지역)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

·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운행 전에 그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기간 동안에는 자동차 등록 전에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조).

· 이전 소유자가 없는 새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신규등록을, 이전 소유자가 있는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이전등록을 하면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자동차 등록 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자동차 365(www.car365.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운전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운전면허』, 『교통·운전』 및 『자동차 구입·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 통신 및 우편

3.4.1. 휴대전화 등 가입

휴대전화 개통

▶ 휴대전화 개통 및 이용

▪ 외국인유학생이 국내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해 두면 소통 및 행정·금융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휴대전화에 요금제를 선택해 개통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단말기 구매 후 요금제를 선택해 개통이 가능합니다(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외국인유학생 가이드북』, 2025. 12., 36~37쪽 참조).

» 요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동통신사에 따라 필요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을 희망하는 통신사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선불 요금제	후불 요금제	알뜰폰(MVNO) 요금제
요금 납부 방식	사용 전 요금 충전	사용 후 납부(월)	사용 후 납부(월)
필요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여권
장점	약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충전한 만큼 사용 가능 복잡한 절차 없는 간편한 개통	다양한 요금제 안정적인 서비스 품질 멤버십 혜택 및 부가서비스 이용 가능 신속하고 편리한 고객센터 운영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 약정 계약 불필요
단점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 데이터 속도, 사용량 등 제한된 혜택 제한적인 고객센터 운영	약정 계약 필요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음	통신사에 따라 개통이 제한될 수 있음 제한적인 고객센터 운영(외국어 상담 및 운영시간 제한) 부가서비스 제한
개통 방법	유심(USIM) 구매	주요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개통(SKT, KT, LG U+)	알뜰폰 통신사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개통
추천 대상	단기 체류 유학생	장기 체류 유학생 안정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사용을 원하는 사람	저렴한 요금제 사용을 선호하는 사람

※ 통신사별 외국어 상담 서비스
√ SKT: ☎ 080-011-6000(고객센터 전화 후 외국어 서비스 요청 필요, 영어·중국어·일본어)
√ KT: ☎ 02-2190-1180(외국인 전담팀, 영어·중국어·일본어)
√ LG U+: ☎1544-0010(고객센터 전화 후 외국어 서비스 요청 필요, 영어)

Q. 미성년자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나요?

A.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민법」 제5조제1항 본문 참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증명서류, 동의서 등 별도의 구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휴대전화 외에 유선전화, 초고속 인터넷, 케이블TV 등을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외국인유학생이 유선전화, 초고속 인터넷, 케이블TV 및 위성TV 등에 가입할 때 특별한 제한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유선전화 등의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입할 회사를 선택한 후 해당 회사의 가입담당부서 또는 고객상담센터 등에 연락해서 가입신청을 하면 됩니다.

[출처: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 참조]

※ 휴대전화 이용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휴대전화 이용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2. 우편·택배 이용

우편 및 택배

국내우편 및 국제우편 서비스

▪ 외국인유학생은 우체국을 통해 국내 및 국외로 편지, 서류 및 소포 등을 보낼 수 있습니다[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외국인유학생 가이드북』, 2025. 12., 39쪽 및 우정사업본부(www.koreapost.go.kr)-사업분야-우편 참조].

구분	내용
국내우편	편지, 서류, 작은 물건 등을 한국 전역으로 발송 가능 발송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요금은 우편물의 무게와 종류에 따라 다름 √ 일반우편: 저렴하지만 추적이 불가능함 √ 등기우편: 받는 사람이 직접 서명해야 하며, 운송장 번호로 배송 상황을 추적할 수 있음
국제우편	해외로 편지, 서류, 선물, 소포 등을 보낼 수 있음 대표적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발송한 우편물은 운송장 번호로 배송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 EMS: 편지, 서류, 소포 등을 빠르고 안전하게 해외로 보내는 국제 특급 서비스로, 한국 우정사업본부가 외국 우편 기관과 협정을 맺어 운영함 √ 국제소포(항공/선편): 항공은 EMS보다 배송이 느리지만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선편은 항공보다 요금이 저렴하지만 배송이 오래 걸림 √ EMS 프리미엄: 우체국과 UPS가 함께 제공하는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로, EMS가 지원되지 않는 국가에도 발송할 수 있음

우체국 택배 및 민간 택배 서비스

▪ 외국인유학생은 우체국 택배 및 민간 택배업체를 통해 한국 전역으로 물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외국인유학생 가이드북』, 2025. 12., 40쪽 참조).

구분	내용	
우체국 택배	가까운 우체국 방문 → 접수 창구에서 운송장 작성 → 물품 무게·크기 측정 후 요금 결제	
민간 택배업체	인터넷 또는 앱으로 방문 접수 신청 → 택배 기사가 집으로 방문 √ 집에서 편리하게 접수 및 발송 가능	가까운 편의점 방문 → 택배 기기에서 운송장 작성 및 출력 → 물품상자에 운송장 부착 후 카운터에서 요금 결제 √ 24시간 이용 가능

※ 우편 및 택배 이용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및 이 사이트 『택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 의료

3.5.1. 국민건강보험 가입

한국의 의료체계

의료기관 유형

▪ 의료기관은 규모와 이용 순서, 서비스 내용 및 범위에 따라 구분됩니다. 감기나 소화기 장애 등 병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원이나 보건소에 가서 치료받고, 병이 낫지 않거나 세밀한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병원이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3조제2항, 제3조의4제1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및 다누리(liveinkorea.kr)-한국생활안내-의료기관 참조].

구분	1단계		2단계
종류	의원, 보건소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치료 내용	외래진료, 예방접종, 건강관리	종합검사, 입원치료	정밀검사, 장애나 질병 치료, 건강관리
해당 의료기관	보건소, 한의원,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건강검진센터 등	여러 진료과가 있는 종합병원	대학 부속병원, 종합병원 등

▪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는 1단계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여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및 제4항 참조).

› 진료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응급환자, 분만,

치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및 혈우병 환자가 진료를 받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 참조).

※ 위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1단계 진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을 바로 이용하는 경우 초진비 부담이 가중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2 제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6 제1호가목1) 및 제2호 참조].

※ 의료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으며, 신분증으로는 외국인등록증, 여권, 한국 발급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분증 대신 모바일 국민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참조).

※ 다국어 의료 상담 전화 서비스

· 24시간 긴급 의료 상담

√ 안전신고(☎ 119): 외국어 상담 요청 필요

·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Medical Korea Information Center)

√ 메디컬콜(☎ 1577-7129): 영어·중국어·러시아어·일본어 상담 지원

·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콜센터(☎ 1345): 20개 언어로 상담 지원, 3자 통화 지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국민건강보험"이란?

▪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요양비, 건강검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등이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참조).

외국인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 국내 체류 외국인유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1항·제2항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제3항 참조).

지역가입자 요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5호의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연구를 위한 유학[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유학(D-2)이거나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하는 유학에 한정함]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한 유학[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일반연수(D-4)이거나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하는 유학에 한정함]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5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

▹ 국내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

▹ 국내 체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 방법

▪외국인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자동으로 가입 처리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적용 안내』, 2021. 4., 4쪽 참조).

체류 자격	가입 시기(당연가입 일자)
유학(D-2), 초·중·고생(D-4-3)	최초 입국 시 ⇒ 외국인등록일
	외국인등록 후 재입국 시 ⇒ 재입국일
초·중·고생(D-4-3) 외의 일반연수(D-4)	입국일부터 6개월 후 가입

▪위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대원인 경우에 한정함), 소득 및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제4항 및 별표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 상실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잃게 됩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제2항).

지역가입자 상실 요건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함 5.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또는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지역가입자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가입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 함 6. 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 날(재외국민 또는 3.의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외국인이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함)

국민건강보험료

▪외국인유학생의 보험료는 그 개인을 각각 하나의 세대로 보고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체류자격이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국민건강보험료를 경감받습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가목1)].

› 2023년 3월 분 이후의 월별 보험료: 50%

▪국민건강보험료는 매월 부과되며,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8항 본문).

※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민원센터(☎ 033-811-2000, ☎ 1577-1000)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그 밖의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6. 유학 중 아르바이트

3.6.1.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

▪원칙적으로 외국인유학생은 학업 목적 외 취업 활동(체류자격 외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나,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유학생도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제20조 참조).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신청은 다음의 절차에 따릅니다.

절차	세부 내용
신청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다음의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재학증명서(「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출함) ※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사실상의 부양자·형제자매·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신청 가능함(「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1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위치 및 연락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immigration.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심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토를 통해서 허가 여부가 결정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참조)
▼	
허가 또는 불허가	체류자격 외 활동이 허가된 때에는 신청자의 여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스티커를 붙여줌. 다만, 여권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는 것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갈음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체류자격 외 활동 불허가 사실을 알려주어야 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한 외국인유학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받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94조제12호).

외국인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 아래의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에서 제공하는 정보이며, 외국인유학생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해당 매뉴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허용 대상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이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하려면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37쪽 참조).

- 유학(D-2) 체류자격 중 세부 체류자격 D-2-1 ~ D-2-4, D-2-6, D-2-7 해당하는 사람
- 어학연수생(D-4-1, D-4-7) 자격 및 방문학생(D-2-8) 자격은 변경일(비자소지자는 입국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
- 유학과정 종료(전문학사 2년, 학사 4년)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함(다만, 석·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도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함)

※ 위와 같이 허용하는 경우도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허용 범위

▪시간제 취업의 허용 범위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37쪽 참조).

- 업무와 전공 간의 연관성이 있거나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활동
- 사회 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활동

한국어 능력별, 학위 과정별 허용 시간(2023. 7. 시행)

과정	학년	국내체류기간	한국어 능력 기준		허용 시간		
			① TOPIK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③ 세종학당	충족여부	주중	주말·방학	인증대학·성적우수, 한국어우수(주중)
전문학사	무관	즉시 가능	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이수	×	10시간		
					25시간	시간제한 없음	30시간
학사	1~2학년	즉시 가능		×	10시간		
					25시간	시간제한 없음	30시간
	3~4학년	즉시 가능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중급2 이상 이수	×	10시간		
					25시간	시간제한 없음	30시간
석·박사	무관	즉시 가능		×	15시간		
					30시간	시간제한 없음	35시간

▪시간제 취업의 제한 분야 및 예외적 허용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38쪽 참조).

구분	세부 내용
제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활동 전문 분야(E-1 ~ E-7) 활동 범위(자격 외 활동 허가 대상) √ (예시)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회화지도(E-2) 활동 등 비전문취업(E-9)의 제조업, 건설업 및 선원취업(E-10) 업종 √ 다만, 한국어능력 4급 이상인 경우 제조업 허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파견, 도급, 알선(다만,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서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 대학이 산학 연계 방식으로 유학생의 인턴활동을 알선하는 경우는 제외함)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원거리 근무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비자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사업장에서의 활동
예외적 허용	(제조업 분야) 한국어능력 4급 상당 이상 취득한 경우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등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시설에서 안전보조원, 놀이보조원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 활동 전문분야(E-1~E-7. 다만, E-6-2는 제외함): √ 전문분야(E-1~E-7. 다만, E-6-2는 제외함)의 보조적인 활동 √ 일-학습연계 유학생의 전문분야(E-1~E-7) 인턴 활동[소정의 연수 수당을 받고 전문분야(E-1~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방학 기간 중 학위과정 유학생의 전문분야(E-1~E-7) 인턴 활동 ※ 전문분야(E-1~E-7)의 보조적인 활동 또는 인턴 활동으로 시간제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본인의 취업 가능 여부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기타 조회 서비스-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간제 취업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학업 종료

4.1. 체류 결정

4.1.1. 진학 또는 취업

외국인유학생의 국내 체류 결정

상위 교육기관으로의 진학 또는 국내 취업 결정

▪외국인유학생이 현재 재학 중인 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 있는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학하거나 국내에 취업해서 이후로도 체류하게 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체류자격의 변경 또는 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호, 제10조의2,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참조).

결정 내용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 여부
상위 교육기관으로의 진학	일반연수(D-4)	한국어 연수과정 또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 있는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학 시 ⇒ 유학(D-2)로 체류자격 변경 필요
	유학(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그 이상의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학 시 ⇒ 체류기간 연장 필요
국내 취업	유학(D-2), 일반연수(D-4)	교육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서 취업 시 ⇒ 그 직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 변경 필요 ※ 졸업 후 취업 준비(구직활동)가 필요한 경우에는 ① 먼저 구직(D-10)으로 체류자격 변경 후, ② 향후 취업 시 해당 직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 변경 필요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므로(「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취업과 같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은 다음의 절차에 따릅니다.

절차	세부 내용
신청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및 체류자격별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사실상의 부양자·형제자매·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신청 가능함(「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1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 체류자격별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위치 및 연락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immigration.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심사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토를 통해서 허가 여부가 결정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참조)
▼	
허가	체류자격 변경이 허가된 때에는 신청자의 여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스티커를 붙여줌. 다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으로 이를 갈음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연장허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유학(D-2) 자격으로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이 그 이상의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학할 때는 체류자격이 동일하므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학(D-2) 자격으로 입국하면 1회에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2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및 별표 1 참조).

※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의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위기에 따른 국경의 폐쇄,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5제1항).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다음의 절차에 따릅니다.

절차	세부 내용
신청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및 체류자격별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사실상의 부양자·형제자매·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신청 가능함(「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1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 체류자격별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위치 및 연락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immigration.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심사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토를 통해서 허가 여부가 결정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참조)
▼	
허가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된 때에는 신청자의 여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을 적거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붙여줌.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한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을 적음으로써 이를 갈음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 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

·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및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제6호 참조).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5.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위반 시 제재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사정 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강제퇴거 또는 벌칙

① 체류자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하지 않거나 ② 체류기간이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94조제16호·제17호).

> ※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위한 온라인 방문 예약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민원신청-방문예약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그 밖에 비자·여권, 외국인근로자 취업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비자·여권』 및 『외국인근로자 취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귀국 결정

4.2.1. 출국 시 준수사항

출국

출국심사

▪ 외국인유학생이 출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8조제1항).

▪ 출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답해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여권명의인의 본인 여부 및 여권의 위·변조 여부, 출입국 규제 여부 등을 확인해서 출국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1조제1항 본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 참조).

▹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유학생은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본문 및 제15조제4항).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국심사 요건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7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유효한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유효한 사람 대한민국과 상호 간에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협정 등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합의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로 정하는 17세 이상인 사람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17세 이상인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이 경우 14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해야 함) 3. 그 밖에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 이 경우 입국심사를 받거나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외국인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 2.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단서).

출국 허가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여권에 출국심사인을 찍어 출국을 허가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제1조제3항 본문).

▹ 다만,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국심사를 마친 외국인유학생에 대해서는 출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출국 정지

▪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9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제2항).

6개월 이내의 기간 출국 정지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3. 1천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4.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6.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7. 그 밖에 1.부터 6.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외국인유학생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9조제1항, 제4조제2항).

›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함)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함)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출국 정지 해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가 해제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제1항).

▪출국정지로 인해 허가받은 체류기간까지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유학생은 출국정지 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는 체류기간 연장 등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외국인등록증 반납

출국 시 반납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유학생이 출국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1항 단서).

√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 출국하였다가 그 허가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 복수비자 소지자나 재입국허가 면제대상 국가의 국민으로서 일시 출국하였다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일시 출국하였다가 그 유효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